

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산업경제위원회
1999. 4. 17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9년 4월 1일

· 회부일자 : 1999년 4월 1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59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1999.4.9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박경국)

가. 제안 이유

○ '94. 12. 22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라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농지
확대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규정 삭제로 존치 근거
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폐지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정 노 환)

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근거법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규정의 삭제로 존치 근거가 상실된바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 안 가 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- ◎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
- ◎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